

2003년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

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

- 시장금리(5~6% 수준) 및 국세환급 가산금이자율(1일 0.013%, 연 4.75%)을 감안하여 가산세율 인하
- 1일 0.05%(연 18.25%) → 1일 0.03%(연 10.95%)로 인하
* 납부불성실가산세 = 무납부세액 × 무납부일수 × 3/10,000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분부터 적용

■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대

-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“회수기 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”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함
 -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

■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에 따른 승인 일을 명확히 규정

-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, 승인여부 통지가 지연된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
 - 세무서장이 2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

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

-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법인 등기부등본의 첨부를 제외함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

■ 인·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

○ 인·허가 관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해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

-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는 때에는 시·군·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
- 2003. 7. 1.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■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

-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거래처별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
 - 거래처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함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함

■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테이프 등으로 제출 가능

- 현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서류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관,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
 -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

■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용역에 대

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

- 월드컵 이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
- 영세율 적용 시한(당초 적용시한 : 2002. 12. 31. 까지)을 6개월 연장하여 2003. 6. 30. 까지 영세율 적용
- 2003. 7. 1.부터 과세됨

■ “기능성 쌀” 부가가치세 면제

-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능성 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

【면세 요건】

-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
- 쌀을 분쇄한 후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종류의 것은 과세
- 쌀의 함량이 90% 이상이고, 쌀전분의 호화정도가 40% 이하일 것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
* 시중제품 중 녹차쌀(쌀 50%, 밀가루 47%, 녹차 3%로서 쌀을 분쇄한 후 재성형)은 계속 과세됨

■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

-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미화 300불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·특별소비세·주세·관세 등의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내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지원
-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제도의 내용
-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·반출하는 경우, 구입시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의 세

금을 면제

-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, 주세,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(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)
-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→ 1인당 1회에 35만원 이하, 연 4회 구입 허용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, 주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(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)
- 저주도여행객의 범위
· 저주도에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19세 이상의 내국인 및 외국인(제주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)을 말함
- 2002. 9. 1.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

■ 장애인용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

-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. 다만, 범용성이 없고 장애인용으로만 특수 제작된 것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
-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
· 점자판과 점필
·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
·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
·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
·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면 낭독소프트웨어
·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

(현재 영세율 적용 중인 품목)
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보조기, 지체장애인용 지팡이,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,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, 목발, 성인용 보행기, 매트리스·쿠션

- 침대 등 욕창예방물품, 인공후두, 장애인용 기저귀, 텔레비전 자막수신기
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

■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

-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
-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면세적용
- 2003. 7. 1.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

■ 농어업용 면세유류 적용시한 연장 및 공급대상 확대

- 농·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2003. 6. 30. 까지 전액 면제하고 2003. 7. 1.부터 2003. 12. 31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, 그 적용시한을 각각 2년간 연장하여 농·어민 등을 지원하고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함
- 2005. 6. 30. 까지는 전액 면제하고, 2005. 7. 1.부터 2005. 12. 31. 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
- 임업인의 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도 면세유 공급
- 2003. 1. 1.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

자료제공 및 문의 _____
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397)
E-mail : ho25400@nts.go.kr